

보도 일시	2022. 4. 12.(화) 11:00 (국무회의 종료 후)	배포 일시	2022. 4. 11.(월) 15:00
담당 부서	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자립지원과	책임자	과 장 김은형 (02-2100-6271)
		담당자	사무관 이민재 (02-2100-6272) 주무관 고은정 (02-2100-6273)
	청소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양철수 (02-2100-6231)
		담당자	사무관 나태준 (02-2100-6232)

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~18세에서 만 9~24세로 확대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개정안, 12(화) 국무회의 통과 -

-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,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-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~18세에서 만 9~24세로 확대하였다.
 - * ('21년) 만 11~18세 (11.4만 명) → ('22년) 만 9~24세 (24.4만 명)
 - 시행령 개정에 따라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, ‘한부모가족지원법’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~24세(1998.1.1.~2003.12.31. 출생자)는 오는 5.1.(일)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.

* 만 9~10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임

- 지원금액은 월 12,000원(연간 최대 144,000원)이고,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※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온·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매

- 또한, 개정안은 시·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‘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’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*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·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.

*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, ②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

-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하는 날('22.4.21.)부터 시행된다.

- 【붙임】 1.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
2.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요
3.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령안

□ 신청 개요

-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**만 9세~만 24세*** 여성청소년
 * 1998.1.1.~ 2013.12.31.출생 청소년(2022년 기준)
- 지원기간 :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구매권 지급 (최대 16년)
- 신청기간 : 2022년 1월부터 **12월 15일까지**
 ※ 만19~24세(1998.1.1.~ 2003.12.31. 출생) 여성청소년은 '22.5.1.부터 신청가능
 ※ 2021년에 구매권을 지원받았던 19세(2003년생)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구매권 생성 예정(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)
-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·모바일 앱 신청

<방문신청>

- 신청인 :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
- 구비서류 :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
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장소 :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<온라인신청>

- 신청인 : 청소년 대상자 본인,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
 ※ 단,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
- 신청방법 : 복지로(<http://www.bokjiro.go.kr>) 및 앱 이용
 ☞ 사업명 검색 :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

<생리용품 구매권(바우처) 지원절차>

구 분	주 요 내 용
지원신청 (지원대상자)	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복지로 홈페이지*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* http://www.bokjiro.go.kr
지원결정 (지자체 담당자)	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-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
물품구매 (지원대상자)	- 국민행복카드 발급 - 온·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

□ 개 요

- (역할) 청소년안전망* 내 필수 연계기관으로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지원기관

*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청소년안전망)은 관련기관 협의체로 청소년 안전망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의 수행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

- (근거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·제29조

* (제9조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(제29조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(설치) 지방자치단체별(시·도, 시·군·구)로 설치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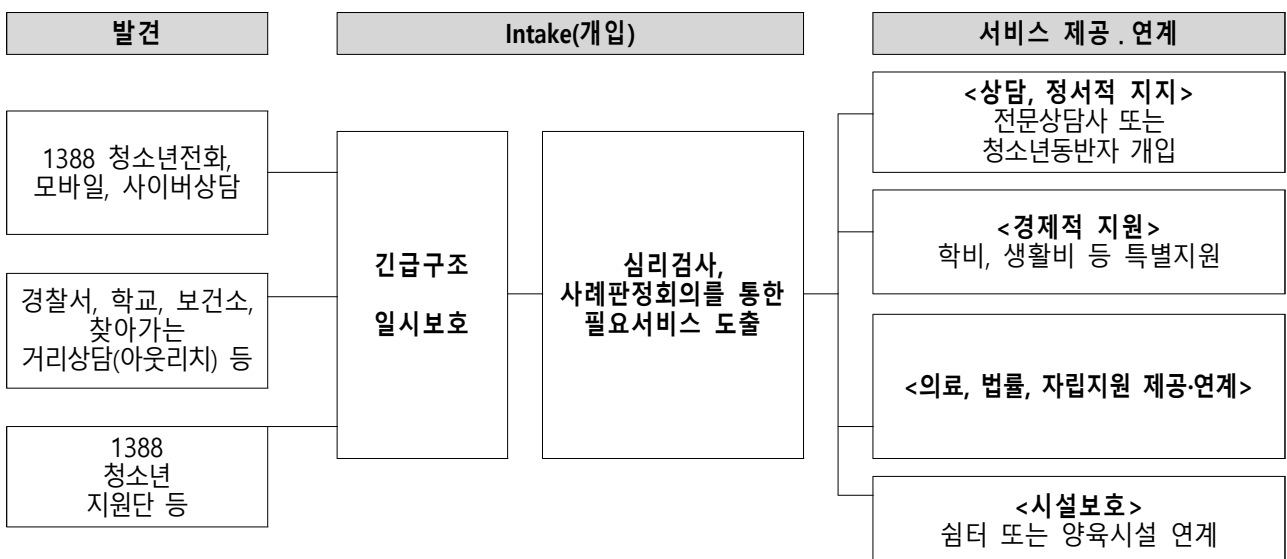
(‘22년 기준, 단위 : 개소)

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240	26	16	9	11	6	3	6	1	33	14	13	16	15	23	23	22	3

- (인력) 시·도 센터 14명(국비지원 6명), 시·군·구 센터 5명(국비지원 3명) 이상

- (운영체계) 청소년안전망 내 구조-개입-서비스제공 및 연계 수행

청소년안전망(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)

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의 제목 “(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”을 “(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를 “각 호”로, “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(이하 “지원대상 여성청소년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(이하 “보건위생물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한다”를 “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보건위생물품”을 “생리용품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2항 중 “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[보건위생물품]을 “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[생리용품]으로, “교부할”을 “지급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건위생물품”을 “생리용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”을 “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”으로,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신청해야”로 한다.

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

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 중 “법 제32조의2”를 “법 제32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”을 “법 제6조제3항, 제12조의2제8항,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2 중 “보건위생물품”을 “생리용품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다목의 자격기준란 5)를 7)로 하고, 같은 란에 5) 및 6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
6)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
가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
나)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
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

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
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
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(이하 “지원대상 여성청소년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(이하 “보건위생물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한다.	제3조의2(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<u>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.</u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4. ----- <u>생리용품</u> ----- -----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[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]을 교부할 수 있다.	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[생리용품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급할</u> -----.</u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14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) ① ~ ④ (생략)
<신설>

제17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) 법 제32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

③ -----
----- 생리용품 -----

-----.

④ -----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-----

----- 신청해야 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) 법 제32조의 2제1항 -----
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가정에서 발생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<u>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</u>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(생략) 1의2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<u>보건의료생물품</u>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. ~ 9. (생략)	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<u>법 제6조제3항, 제12조의2제8항,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----- <u>생리용품</u> ----- ----- 2. ~ 9. (현행과 같음)